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31-6258 / 전송 733-9535~6

문서번호	세경 13388-515	취급		시	장
시행일자	1994. 5. 26	보존			
경유지 (제 1 안)		국	장	전결	707 /
수신	내부결재	과	장		법무담당관 김상필
참조		계	장	38	
		기안	장	광	입 김영

고시.공고
1994. 5. 26.
제1934
178호
결재
1994. 5. 26
재무국장
26
협조

제목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시민이 행정정보공개자료를 열람 또는 복사할 때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, 이를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별안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- 가. 입법예고안 : 별첨
- 나. 입법예고기간 : '94.5. ~ '94.6. .(20일간)

첨부 1.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. 끝.

(제 2 안)

수신 : 공보1담당관
제목 :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시보게재 의뢰

1.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시보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공고안 : 별첨

첨부 :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1부. 끝.

세 정 과 장

김본태조각

2-1 047

4

(제 3 안)

수신처 : 수신처참조

제목 :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

1.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시민이 행정정보자료를 열람 또는 복사할 때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니, 유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'94.6. 까지 세정과장 참조 제출하기 바람 기일내 제출의견이 없으면 별도 의견없는 것으로 처리할 것임.

가. 의견조회 사항 : 별첨

첨부 :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1부. 끝.

서울특별시장

수신처 : 기획담당관, 서관(1-5), 서국(1-14), 서본부(1-4).

서본부

2-2 048

서본부(1-4)

48

공 고 (안)

공고번호 1994.5.24 제 169 호		
발행처	발행일자	발행량
서울특별시	1994.5.24	1부

○ 서울특별시공고 제 호

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법예고

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94년 5월 일

서울특별시장

1. 개정취지

- 서울특별시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시 열람, 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징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에 행정정보 공개자료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규정을 신설하고,
- 법령의 개정 등으로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게 된 민원발급수수료 항목 삭제

2. 주요내용

가. 행정정보 공개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.

- 문서 또는 필름열람(1건 1회) : 100원
- 문서의 복사(1매) : 100원
- 마이크로필름의 복사(1매) : 100원
- 컴퓨터 입력자료의 인쇄(1매) : 100원

인본관리(인)

나. 법령의 개정 또는 제도의 개선으로 필요없게된 민원발급수수료
종목 삭제

- 소방시설증명 : 소방시설 증명의 첨부제도 개선('79.3.13)
으로 증명발급 폐지
- 운전경력(무사고)증명,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
: 경찰청 직제 개편 및 도로교통법 개정('91. 5.31)으로
국가수입으로 됨.
- 아취 및 육교사용허가 : 도로법시행규칙에 규정('94.2.1)
- 사설시장개설 및 경신신청 : 도소매업진흥법시행규칙에
규정('88.11.29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4.6.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A4 용지 세워서 작성)를 서울
특별시장(참조:세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전화 731-6256~9)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여부 및 그 이유)

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
우본대국립(행)

050

2

10